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0가단1495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

대리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

담당변호사 정형윤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20.

판 결 선 고 2021. 9. 1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8. 24. 체결된 10,000,000원, 2020. 8. 25. 체결된 10,000,000원, 2020. 8. 26. 체결된 2,000,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20,530,689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,530,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에 대하여 ‘19,920,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’의 구상금 채권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20.자 2020가소1380801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)을 가지고 있고, 이후 610,475원의 대지급금이 추가되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,530,689원(=19,920,214원+610,475원)이다.

나. C은 처인 피고에게 2020. 8. 24. 10,000,000원, 2020. 8. 25. 10,000,000원, 2020. 8. 26. 2,000,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.

다. C은 위 각 증여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였다.

[인정 근거]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, E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피고에 대한 각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,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, C에게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.

다.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, 이러한 경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. 따라서 C의 사해행위를 통해 금원을 이전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사해행위취소,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1)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2)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,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.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은 C이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22,000,000원인데, 현금은 그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인 20,530,689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.

마. 소결론

피고와 C 사이에 2020. 8. 24. 체결된 10,000,000원, 2020. 8. 25. 체결된 10,000,000원, 2020. 8. 26. 체결된 2,000,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20,530,689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0,530,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범석